

國家保衛立法會議會議錄 第18號

國家保衛立法會議事務處

1981年 1月30日(金) 午後 2時開議

議事日程(第18次本會議)

1.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2.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3. 一般赦免令同意案
4.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5.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

附議된案件

1.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提出)..... 1面
2.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提出)..... 1面
3. 一般赦免令同意案(政府提出)..... 3面
4.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面
5.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3面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4面

(14時 2分 開議)

○議長 李 浩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議事局長 趙球鉉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提出)
2.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提出)

(14時 4分)

○議長 李 浩 議事日程 第1項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2項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이상 2件을 一括해서 上程합니다.

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李基百 運營委員會 委員長 李

基百이 올시다.

運營委員會가 提案한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改正法律案을 提案하게 된 經緯를 報告드리겠습니다.

當 委員會는 1981年 1月20日 第10次 運營委員會에서 이상 2件의 改正法律案을 運營委員會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同 改正法律案을 起草 成案할 小委員會를 構成하여 이를 委任하였습니다.

1981年 1月29日 第11次 運營委員會에서 小委員長으로 부터 小委員會의 起草結果를 報告받고 이를 진지하게 審査한 結果 運營委員會案으로 채택하기로 原案 議決하였으며 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와 字句의 審査를 받았읍니다.

먼저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읍니다.

이 改正法律案은 國會法의 改正에 따라 이와 관련된 內容을 一部 整理하려는 것으로서 改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國會法이 改正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根據條項을 國會法 第121條에서 第124條로 修正하였고

둘째 國會가 國政調査를 實施함에 있어서 調査特別委員會 이외의 調査班도 構成할 수 있도록 改正된 國會法의 規定에 따라 證人 議長 또는 委員長만이 證言·鑑定을 要求할 수 있었던 것을 調査班長도 이를 要求할 수 있도록 追加하였으며

세째 正當한 理由없이 證人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要求된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하던 것을 50萬圓이하로 上向 調整하여 現實化하였습니다.

네째 이 法 施行과 관련하여 證人 또는 鑑定人에 대한 旅費 및 手當支給등 기타 필요한 事項을 議長이 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定하도록 第11條를 新設하였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國會事務處法 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國會事務處法을 全面改正하고자 하는 것은 國會法의 改正에 따라 圖書館을 事務處에 吸收하고 아울러 事務處機構를 合理的으로 改編함으로써 事務處의 立法支援 機能을 強化하려는 것입니다.

이 法을 改正함에 있어 基本方向은 人力을 合理的으로 活用하고 內部機關間的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維持하며 國會公務員의 職級을 行政機關의 公務員職級과 均衡을 이루도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이 法은 從前法과는 달리 事務處에 圖書館을 吸收함에 따라 “第1章 總則” “第2章 事務處” “第3章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 “第4章 圖書館” “第5章 補則”으로 나누고 全文 18條와 附則 4個項으로 規定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改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이 法의 目的과 事務處의 職務 및 圖書館의 職務를 總則에 規定하였고

둘째 事務總長은 從前과 같은 國務委員 相當의 別定職으로 補하여 事務處 및 圖書館의 業務 全體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

揮監督함으로써 指揮體系를 一元化하였으며

세째 事務總長 所屬下에 圖書館을 두되 圖書館長은 現行과 같이 次官級으로 하여 그 機能의 獨自性을 賦與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圖書館을 事務總長 所屬下에 들으로써 指揮體系를 一元化하고 事務處內部機關 相互間的 協調體制를 活性化하는 동시에 圖書館 自體業務의 內實을 期하여 立法支援機能을 強化하려는 것입니다.

네째 3級이상 公務員의 任用權은 議長이 가지며 기타 公務員의 任用權은 事務總長이 가지되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事務總長은 事務次長 또는 圖書館長에게 그 任用權의 일부를 委任할 수 있게 하여 人事의 圓滑化를 期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事務次長은 圖書館業務를 除外한 事務處業務에 대하여 事務總長을 補佐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하도록 規定하고 事務次長은 次官相當의 別定職으로 하여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事務處의 組織은 補助機關으로 2級의 局長 및 3級甲類의 課長을 두고 事務總長 또는 事務次長 밑에 2級내지 3級甲類의 擔當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圖書館은 그 補助機關으로 2級의 局長 및 3級甲類의 課長을 두고 圖書館長을 補佐하는 2級乙類 및 3級甲類의 擔當官을 둘 수 있도록 規定하였습니다.

일곱째 各 委員會에는 次官補相當의 專門委員 1人和 2級의 立法審議官과 3級의 立法調査官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國會가 委員會中心으로 運營될 것에 對備하여 委員會의 立法調査機能과 立法支援機能을 더욱 補強하고 동시에 委員會의 議事補助機能을 專門委員이 擔當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委員會所屬 公務員은 證人と 같이 職務上으로는 所屬委員長의 指揮를 받고 服務上으로는 事務總長의 監督을 받도록 하였으며 專門委員은 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委員會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하도록 하고 圖書館長에 대하여 立法에 필요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도록 하여 圖書館과의 事務協調

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議長은議會制度의發展을期하기 위하여調査研究를目的으로하는法人을設立할수있도록하고그法人에대하여出捐金을交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는앞으로우리나라國會의漸進的인發展을도모하기위한研究機關을設置할수있는根據規定을둔것입니다.

그밖에앞으로豫想되는夜間國會등에對備한職員의時差制勤務規定을새로두었습니다.

이상으로2個改正法律案에대한提案說明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當委員會에서立案한대로議決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이상 2件 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 濤 먼저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이 많음)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다음은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에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이 많음)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3. 一般赦免令同意案(政府提出)

(14時13分)

○議長 李 濤 다음은議事日程第3項一般赦免令同意案을上程합니다.

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 나오셔서審査報告하여주시기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 鄭喜澤 法制司法委員會 鄭喜澤입니다.

一般赦免令同意案에대한審査結果를報告드리겠습니다.

이同意案은公務員倫理憲章宣布에 즈음하여 과거의 一時的인 過誤로 非違를 犯한 公務員에 대하여 懲戒赦免을 實施하여 改過

遷善의 機會를 賦與함으로써 새로운 民主福祉國家 建設에 積極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憲法 第54條第2項 및 赦免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1981年1月26日 政府에서 提出한 것으로서 1981年1月29日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政府原案대로 同意하였습니다.

이 一般赦免令에 있어서의 懲戒赦免의 對象은 1980年12月29日 이전에 懲戒處分을 받은 前 現職 公務員과 1980年12月29日 이전에 懲戒事由에 該當하는 非違를 犯한 公務員을 그 對象으로 하였고 다만 1980年7月1日 이후 罷免處分을 받은 者와 1980年7月1日 이후 金品授受의 非違를 犯한 者는 除外하였습니다. 이 懲戒赦免의 效果는 懲戒處分을 받은 者는 懲戒處分의 效力이 喪失되어 任用 昇進 報酬等 人事管理의 制限이 解除되고 懲戒事由에 該當하는 非違를 犯한 者에 대해서는 懲戒要求權이 消滅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案대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一般赦免令同意案 審査報告書

(法制司法委員會)

一般赦免令同意案

(政府)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 濤 一般赦免令同意案에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이 많음)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4.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5.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16分)

○議長 李 濤 다음은議事日程第4項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5項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을 一括해서 上程합니다.

內務委員會委員長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張承台 內務委員會 張承台입니다.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과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內務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의 趣旨는 請願警察에 관한 道知事의 權限의 一部를 警察署長에게 委任함으로써 業務處理의 迅速性和 簡素化를 期하려는 것으로서 그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請願警察의 配置 任用承認 配置의 中止 및 監督 등에 관한 道知事의 權限중의 一部를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을 新設하는 것입니다.

다음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의 趣旨는 警備員의 士氣를 昂揚시키기 위하여 年齡制限을 緩和하는 것으로서 現行法上 警備員이 될 수 있는 者의 年齡上限線 50歲를 55歲로 延長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法律案 등은 1981年 1月26日 政府가 提案하였으며 1月28日 第16次 內務委員會에서 所管部處 長과 關係公務員을 出席시킨 가운데 진지한 審議를 한 結果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一部 內容을 修正하여 議決하였고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은 政府原案대로 議決하여 各各 法制司法委員會의 審査를 거쳤습니다.

아무췌로 內務委員會가 議決한 대로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政府)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 (政府)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 濤 먼저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內務委員會의 修正案과 기타 部分의 原案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에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教育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

(14時20分)

○議長 李 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教育法中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文教公報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教公報委員長 宋志英 文公委員會 宋志英입니다.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文教公報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教育正常化施策의 일환으로 政府에서 提出한 이 改正法律案은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을 延長하여 初等教育의 質的 向上을 期하고 大學 및 高等學校入學制度 등을 改善하여 學校教育을 內實化하려는 것으로서 그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高等學校의 入學은 市 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여만 入學할 수 있는 것을 內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方法에 의해서도 入學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大學入學豫備考査制를 大學入學學力考査制로 變更하여 그 主要事項을 規定하고 세계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 聽講生制度를 廢止하며

네째 현재 2年制인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을 4年으로 延長하고

다섯째 國家技術資格法 施行으로 實效성이 喪失된 技術員資格證制度를 廢止하는 한편 敎員資格基準 등을 補完調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이 法案을 진지하게 審査한 결과 敎員의 處遇改善과 教育財政 確保에 대한 政府의 決意를 분명히 하며 法體系上의 未備點을 일부 補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修正 可決하였읍니다.

修正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敎員의 經濟的 地位를 우대하는 條項을 插入하였고

둘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教育財政의 安定的 確保를 위하여 적절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新設하였으며

세째 博士學位는 授與過程에 대한 法體系

상의 未備點을 補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改正內容과 修正內容의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文教公報委員會에서 審査 議決한 대로 通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教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文教公報委員會)

教育法中改正法律案
(政府)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 濤 教育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文教公報委員會의 修正案과 기타 部分의 原案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會議는 별도로 通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24分 散會)

○出席議員數 56人

○出席한國務委員

文教部長官 李 奎 浩

○出席한政府委員

法務部次官 鄭 泰 均

【報告事項】

○議案提出

教育法中改正法律案

(1月6日 政府提出)

文教公報委員會에 回附

一般赦免令同意案

(1月6日 政府提出)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

請願警察法中改正法律案

用役警備業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件 1月26日 政府提出)

이상 2件 內務委員會에 回附

旅券法中改正法律案

(1月26日 政府提出)

外交國防委員會에 回附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事務處法改正法律案

(이상 2件 1月29日 運營委員長 李基百議員 提出)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中改正法律案

(1月29日 政府提出)

經濟第一委員會에 回附

○議案審査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法官懲戒法中改正法律案

執達吏法中改正法律案

訴訟促進등에 관한特例法案

(이상 4件 1月23日 法制司法委員長 鄭喜澤議員 提出)

國會議員選舉法案

國會法改正法律案

(이상 2件 1月23日 選舉法等政治關係法特別委員長 金仕龍議員 提出)

이상 6件 原案 議決